

## 1. 개정이유

강화된 충돌시험기준 시행 시기에 대해 국내 안전기준 시행일과 EU 시행일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통상마찰 우려를 해소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제작사의 기술개발 지연 등을 고려하여 「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의 일부 규정의 유예기간 연장을 추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강화된 충돌시험기준을 EU 시행시기와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연장(안 부칙 제1조 및 제5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\*\*. \*\*. ~ \*\*. \*\*. 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국토교통부령 제 호

##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4호 중 “별표 11의5”를 “별표 11의5(제1호라목을 제외한다)”로 하고, “제102조의4” 및 “별표 14의8”을 삭제하며,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별표 11의5제1호라목, 제102조의4, 별표 14의8: 2022년 7월 5일 제5조(충돌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) 부칙 제1조 단서 규정 시행 당시 제작·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1. 제89조, 제91조, 제102조, 제102조의3, 별표 11의3, 별표 11의5(제1호라목을 제외한다), 별표 14, 별표 14의2 및 별표 14의7 : 2022년 8월 31일
2. 별표 11의5제1호라목, 제102조의4 및 별표 14의8 : 2024년 7월 4일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